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1년 10월 31일

○ 회부일자 : 2001년 11월 2일

3. 제안이유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지방이관 계획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운영중인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권의 우리도 이관에 필요한 운영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제1조)

나.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사업은 충북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지원 및 활성화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위한

창업지원실운영 및 경영기술지도, 소프트웨어 사업자 지원 및 홍보 등으로 함(제3조)

- 다. 지원센터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나 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라. 센터에 대한 도의 운영비 보조 및 센터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제10조)
- 마.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 5. 검토의견

### ○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바

충북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종사자들에게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정보 등 사업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운영하여 왔으나,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지방이관 계획에 따라, 충북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조례를 제정하면서 제2조(위치)에 센터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유와,

제4조(위탁운영 등) 제3항에 센터운영규정을 수탁 받은 자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센터운영규정은 도의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항 제4호 “기타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막연히 제시하였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센터에 입주할 입주 대상 및 대상자 선정방법 등은 명문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센터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비 소요 예상내역과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지방이관 계획에 따라 2001. 6월말까지 이관토록 하였으나,

우리 도에서는 2003년 하반기까지 오창 벤처임대빌딩을 건립하여 독립법인을 설립 『S/W지원센터와 통합』 계획으로 있으므로,

정보통신부와 협의, 협약기간을 2002. 8. 22에서 독립법인 설립 시까지(2002. 9월 또는 2003년 말까지) 연기 후 이관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붙 임 :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